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6호 2015년 12월 pp.239~266

한국세무학회

## 간이과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연구

- 독일 · 일본 · 중국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

서정우\*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일본의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세제도의 신뢰성 ·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점차 줄이려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일본 역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제어> 소규모사업자, 간이과세제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박사연구생, justinxu0420@hotmail.com

논문접수일 2015년 9월 27일

1차수정일 2015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5년 11월 23일

## I. 서 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거래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의 증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의 크기는 결국 거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의 크기와 상관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는 거래 관행이나 거래상대방이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들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 불건전한 납세관행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어 부가가치세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가 매출액을 정확하게 신고해도 세 부담은 크지 않도록 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 지난 1996. 7. 1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없이도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3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전체 납세인원 중 약 31.7% 정도의 인원이 간이과세자로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간이과세자의 거의 대부분(82.7%)<sup>1)</sup>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의 4분의 1 수준<sup>2)</sup>에 이르는 실정이나,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0.4%로 1%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33.4%를 차지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해결 없이는 부가가치세의 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며, 이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장·단기로 제시하고자 한다.<sup>3)</sup>

1) 2013년 간이과세자 신고인원 1,779,011명중 납부의무면제자는 1,471,259명임. (국세청, 『2014국세통계연보』, p. 301)

2) 2013년 납부의무면제자 1,471,259명은 전체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5,609,470명의 26.2% 임.

3)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에는 박승식 외(2012), 김창훈(2011), 최희철(2003), 채영범(2006), 이성식(2005), 오기수(2006), 김유찬 외(2006), 김승래 외(2007) 등 다수 있으나, 본 연구는 독일·일본·중국의 소규모 사업자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장·단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일반이론 및 과세 현황

### 1. 간이과세제도의 일반 이론

#### 가. 과세유형의 구분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된 1977년부터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운용해왔다. 이후 변천이 있었는데 2000년 7월 1 일부로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해 종전의 일반과세, 간이과세, 과세특례로 3원화되어 있던 세제를 일반과세와 간이과세로 2원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간이과세 대상 매출액(세법상 용어는 공급대가) 구간은 2000년 하반기부터 종전 4,800만원~1억 5천만원 미만이었다가 4,800만원 미만으로 축소되었다.<sup>4)</sup> 2000년에 부가가치세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흡수했고, 기존의 과세특례자 중 매출이 큰 상층부는 간이과세자로 매출이 작은 하층부는 납부면제자로 편입시켰다.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체 납세자를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일반과세자, 직전 1억원의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을 구분하고 있다.<sup>5)</sup>

#### 나.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이과세 적용기준 금액에 미달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간이과세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sup>6)</sup>

4) 김승래·박명호·홍범교, 2007, 우리나라 부가가치 세제 정책과제의 경제적 분석 : 과세베이스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pp.72-75.

5)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참조

6) ① 광업

②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과자점업, ㉡ 도정업과 체분업(떡방앗간 포함), ㉢ 양복점업, ㉣ 양장점업, ㉤ 양화점업

㉥ 기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것

③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⑥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⑦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 기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⑧ 사업양수도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⑨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 (1) 과세표준 및 세율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비해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sup>7)</sup>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일반과세자 과세표준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있다.<sup>8)</sup> 또한 간이과세자의 세율은 10%(또는 0%)로 한다.<sup>9)</sup>

### (2) 납부할 세액 계산 산식

납부할 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sup>10)</sup>

|                                                                                                                                  |
|----------------------------------------------------------------------------------------------------------------------------------|
| $\text{납부할 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times 10\%$ |
|----------------------------------------------------------------------------------------------------------------------------------|

### (3) 납부의무 면제제도의 변화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첫 해부터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해왔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2000년 이전까지는 납부세액이 일정액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제도를 사용했다. 그러나 2000년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최저한제도로 바꾸어 운용하고 있다.<sup>11)</sup> 이후 과세최저한 금액에 변화가 없다.

⑩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과세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참조

8)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1항 참조

9)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참조

10)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참조

11) 김승래 외 2인, 2007, 전거서, pp.118-122.

〈표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제도의 변화 추이 연도

| 연 도        | 면세점     | 면제기준 | 면제방법    |
|------------|---------|------|---------|
| 1977년      | 7,500원  | 납부세액 | 소액부징수   |
| 1978-1988년 | 1만원     |      |         |
| 1989년      | 2만원     |      |         |
| 1990-1993년 | 4만원     |      |         |
| 1994년      | 6만원     |      |         |
| 1995년      | 12만원    |      |         |
| 1996-1999년 | 24만원    | 공급대가 | 과세최저한제도 |
| 2000년 이후   | 1,200만원 |      |         |

출처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각 연도 부가가치세법

## 2. 간이과세제도 현황

### 가. 간이과세제도의 현황

간이과세자의 납세인원 및 과세표준, 그리고 납부세액은 아래 <표 2>와 같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5,609,470명 중 간이과세자의 납세자 인원은 1,779,011명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2,764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77조 928억원 가운데 0.4%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표 2〉 간이과세자 과세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 신고인원        |             |       | 신고과세표준          |              |      | 납부할 세액       |           |      |
|------|-------------|-------------|-------|-----------------|--------------|------|--------------|-----------|------|
|      | 계           | 간이<br>과세자   | 비율    | 계               | 간이<br>과세자    | 비율   | 계            | 간이<br>과세자 | 비율   |
| 2009 | 5,124,077   | 1,863,427   | 36.4% | 3,198,265,281   | 29,462,454   | 0.9% | 65,531,347   | 391,628   | 0.6% |
| 2010 | 5,239,103   | 1,828,101   | 34.9% | 3,687,028,107   | 29,020,028   | 0.8% | 67,168,600   | 381,904   | 0.6% |
| 2011 | 5,360,511   | 1,762,349   | 32.9% | 4,122,742,550   | 28,839,681   | 0.7% | 72,164,301   | 373,327   | 0.5% |
| 2012 | 5,385,132   | 1,680,656   | 31.2% | 4,271,928,736   | 27,941,154   | 0.7% | 74,972,015   | 361,716   | 0.5% |
| 2013 | 5,609,470   | 1,779,011   | 31.7% | 4,326,000,072   | 26,969,588   | 0.6% | 77,664,202   | 276,403   | 0.4% |
| 평균   | 5,343,658.6 | 1,782,708.8 | 33.4% | 3,921,192,949.2 | 28,446,581.0 | 0.7% | 71,500,093.0 | 356,995.6 | 0.5%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년도

\* 소숫점 첫자리 이하는 절사하였음.

## 나. 업태별 부가가치율과 현행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 (1) 업태별 부가가치율

본 연구의 논리전개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연도별·업태별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율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lt;표 3&gt; 연도별·업태별 부가가치율

(단위 : %)

| 구분        | 2009  |        | 2010  |      | 2011 |      | 2012 |       | 2013  |        |
|-----------|-------|--------|-------|------|------|------|------|-------|-------|--------|
|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1기    | 2기     |
| 계         | 28.9  | 29.7   | 20.6  | 27.4 | 28.0 | 28.4 | 29.2 | 29.3  | 28.9  | 29.7   |
| 농·임·어업    | 51.1  | 23.8   | 56.0  | 29.0 | 49.0 | 35.4 | 54.6 | 34.1  | 51.1  | 23.8   |
| 광업        | 37.4  | 42.4   | 44.6  | 41.1 | 41.9 | 45.1 | 38.1 | 41.1  | 37.4  | 42.4   |
| 제조업       | 38.1  | 37.4   | 37.3  | 36.8 | 35.8 | 36.6 | 37.2 | 37.5  | 38.1  | 37.4   |
| 전기·가스·수도업 | △50.8 | △156.4 | △63.9 | 7.2  | 22.9 | 5.0  | 4.3  | △69.6 | △50.8 | △156.4 |
| 도매업       | 17.1  | 17.1   | 16.5  | 11.9 | 16.1 | 16.8 | 16.9 | 17.1  | 17.1  | 17.1   |
| 소매업       | 11.5  | 11.1   | 10.6  | 9.7  | 11.0 | 9.7  | 11.4 | 11.0  | 11.5  | 11.1   |
| 부동산매매업    | 19.2  | 3.2    | 21.9  | 19.1 | 40.7 | 11.8 | 19.7 | 10.1  | 19.2  | 3.2    |
| 건설업       | 47.4  | 48.9   | 47.2  | 47.9 | 47.1 | 47.7 | 46.5 | 48.3  | 47.4  | 48.9   |
| 음식업       | 22.2  | 24.7   | 24.0  | 22.1 | 18.4 | 22.6 | 23.2 | 23.1  | 22.2  | 24.7   |
| 숙박업       | 13.7  | 20.5   | 33.2  | 27.3 | 24.8 | 18.6 | 12.8 | 15.4  | 13.7  | 20.5   |
| 운수·창고·통신업 | 12.7  | 40.8   | 39.1  | 38.3 | 34.9 | 37.1 | 37.0 | 37.4  | 12.7  | 40.8   |
| 부동산임대업    | 57.4  | 53.8   | 57.6  | 53.1 | 53.4 | 47.6 | 54.4 | 55.4  | 57.4  | 53.8   |
| 대리·중개·도급  | 59.0  | 60.2   | 64.3  | 63.9 | 63.0 | 62.7 | 61.7 | 61.1  | 59.0  | 60.2   |
| 서비스업      | 54.1  | 51.6   | 54.2  | 51.1 | 53.2 | 51.8 | 54.0 | 51.6  | 54.1  | 51.6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2)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에서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다음 <표 4>와 같다<sup>12)</sup>.

1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4조의3 제4항 참조

〈표 4〉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 종                              | 부가가치율 |
|----------------------------------|-------|
| ①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 ②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 ③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 ④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Ⅲ. 주요국의 소규모사업자 과세특례제도 비교 및 시사점

1977년 5월 17일 제정된 EU 회원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통 지침인 제6차 지침(77/388/EWG)에서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일반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회원국들에 대해 부과징수에 있어 간소화 조치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EU 회원국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과징수 간소화 조치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독일의 표준율 과세제도 (Durchschnittsätze)와 일본의 간이과세제도가 있다. 따라서 독일, 일본, 중국 3개국의 소규모사업자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한편 종전에는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forfait)<sup>13)</sup>가 있었으나 협의과세제도는 1999년도에 폐지되었다.

#### 1. EU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 가. 개 요

1977년 5월 17일 부가가치세에 관한 회원국 법규정의 조화를 위해 이사회에서 제6차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6차 지침은 오늘날 EU의 ‘부가가치세 단일법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제6차 지침은 그 동안 40여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최근의 개정은 지난 2006년도 개정된 2006/112/EEC로, 부가가치세의 명료성, 합리성과 간소화를 한층 더 명확히 하였다.

13) forfait의 사전적 의미는 ‘예상(우리나라에서 종전에 사용되었던 인정과세와 일부 비슷한 면이 있다)’이라는 의미이다. 이 용어가 조세용어로 차용되면서 ‘정확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장부 등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협의’를 통해서 ‘예상’했던 세액을 산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서 ‘협의과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협의과세제도는 프랑스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1965년 4월 30일 법령 제55-465에 의해 도입하였다. 이는 소규모사업자가 제시한 자료(주로 매입 자료임)에 의해서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가 사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협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이었다.

### 나. 제6차 지침의 위치

제6차 지침에서는 납세의무자, 과세거래, 과세거래 장소, 납세의무의 성립, 과세표준, 세율, 면세, 전단계세액공제, 조세채무자와 제반 의무 등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6차 지침은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보다 우위에 존재하며, 개별 국가의 부가가치세 규정들은 가급적 제6차 지침내용에 부합하도록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과징수의 간소화절차 규정

제6차 지침 제24조 제1항은 “소규모사업자의 거래활동 또는 과세구조에 있어 일반적인 과세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회원국은 제29조에서 정한 협의(EC 부가가치세위원회와의 협의)에 의해 정한 조건 및 제한 하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표준율방식과 같은 간소한 과세방식을 적용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인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표준율방식 등을 적용하면 과세매출액이 큰 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과 표준율방식을 적용한 납부할 세액과의 차액이 크게 되므로, 단서규정은 과세매출액이 낮은 소규모사업자에 한정할 수 밖에 없다.

## 2. 독일의 표준율과세제도<sup>14)</sup>

### 가. 표준율의 제정

독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연방재무성에 연방상원의 승인을 얻은 표준율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sup>15)</sup> 연방재무성은 과세기초가 서로 유사하며, 기장의무나 매년도 영업실적에 기초한 결산서 작성의무가 있지 아니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매입세액과 납부세액등 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율을 제정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율에 의해 산정한 세액은 일반적인 과세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편 표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표준율에 의해 과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사업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시기는 결정세액 변경이 더 이상 불가한 시점까지이다. 철회한 사업자가 다시 표준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sup>16)</sup>

14) 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pp. 260-264 참조.

15)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16)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 나. 표준율과세의 적용 대상 및 업종별 표준율

독일 연방재무성이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서는 지난 역년의 매출액이 61,356유로<sup>17)</sup>(약 1억원)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표준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시행령의 부록표 A파트에서는 업종별 표준율을 52업종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sup>18)</sup>

업종별 표준율은 아래의 <표 5>에서와 같이 업종을 수공업·소매업·기타 영업·자유직업소 득자 등 업종의 성질에 따라 크게 4분류를 하고 있다.

<표 5> 업종별 표준율 (시행령 부록표 A파트)

| 업 종 |                          | 표준율        |
|-----|--------------------------|------------|
| 수공업 | 제빵업                      | 매출액의 5.4%  |
|     | 목공업과 가구업                 | 매출액의 9.0%  |
|     | 장식, 예술 및 수선용 철공업         | 매출액의 7.5%  |
|     | 제본업                      | 매출액의 5.2%  |
|     | 인쇄업                      | 매출액의 6.4%  |
|     | 전기설비                     | 매출액의 9.1%  |
|     | 타일, 마루타일업과 기타바닥 및 이의 접착업 | 매출액의 8.6%  |
|     | 이미용업                     | 매출액의 4.5%  |
|     | 정원관리업                    | 매출액의 5.8%  |
|     | 창문업                      | 매출액의 9.2%  |
|     | 건축 및 토목                  | 매출액의 6.3%  |
|     | 건축관련 철공업, 가스 및 수도 설비업    | 매출액의 8.4%  |
|     | 도색업 및 도배업                | 매출액의 3.7%  |
|     | 실내 장식업                   | 매출액의 9.5%  |
|     | 여성용 모자제조업                | 매출액의 12.2% |
|     | 차량 수리업                   | 매출액의 9.1%  |
|     | 철물제조·수리업과 용접업            | 매출액의 7.9%  |
|     | 재단 및 재봉업                 | 매출액의 6.0%  |
|     | 제화업                      | 매출액의 6.5%  |
|     | 석상조각업과 석공업               | 매출액의 8.4%  |
|     | 모르타르 및 석회칠업              | 매출액의 4.4%  |
|     | 소면사업 및 소모사업              | 매출액의 2.0%  |
|     | 목수업                      | 매출액의 8.1%  |

17) 1EU=1,629원으로 환산함

18)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표 5〉 업종별 표준율 (시행령 부록표 A파트) (계속)

| 업 종         |                                                                | 표준율        |
|-------------|----------------------------------------------------------------|------------|
| 소매업         | 화훼 및 식물                                                        | 매출액의 5.7%  |
|             | 연료                                                             | 매출액의 12.5% |
|             | 의약품                                                            | 매출액의 10.9% |
|             | 전기기구, 조명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수상기 및 축음기                                | 매출액의 11.7% |
|             | 자전거 및 모터 부착자전거                                                 | 매출액의 12.2% |
|             | 생선 및 생선가공품                                                     | 매출액의 6.6%  |
|             | 감자, 야채, 과일 및 열대과일                                              | 매출액의 6.4%  |
|             | 라커, 물감 및 기타 도료                                                 | 매출액의 11.2% |
|             | 우유, 유제품, 유지방제품과 계란                                             | 매출액의 6.4%  |
|             | 식료품과 기호품                                                       | 매출액의 8.3%  |
|             | 의류                                                             | 매출액의 12.3% |
|             | 친환경식품                                                          | 매출액의 8.5%  |
|             | 양화업                                                            | 매출액의 11.8% |
|             | 과자류                                                            | 매출액의 6.6%  |
|             | 각종 섬유제품                                                        | 매출액의 12.3% |
|             | 동물과 동물용품                                                       | 매출액의 8.8%  |
|             | 오락용 잡지 및 신문                                                    | 매출액의 6.3%  |
|             | 야생동물·조류 및 가금육                                                  | 매출액의 6.4%  |
| 기타<br>영업    | 아이스크림 가게                                                       | 매출액의 5.8%  |
|             | 민박업소(펜션 포함)                                                    | 매출액의 6.7%  |
|             | 여관 및 음식점                                                       | 매출액의 8.7%  |
|             | 건물 및 창문청소                                                      | 매출액의 1.6%  |
|             | 승용차로 행하는 여객운송                                                  | 매출액의 6.0%  |
|             | 세탁소                                                            | 매출액의 6.5%  |
| 자유직업<br>소득자 | a) 조각가, 조소가                                                    | 매출액의 7.0%  |
|             | b) 그래픽전문가 (상업그래픽전문가 제외), 화가                                    | 매출액의 5.2%  |
|             | 연극,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영상 및 음반제작에 필요한 역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협력·공급하는 자연인 | 매출액의 3.6%  |
|             | 대학교원                                                           | 매출액의 2.9%  |
|             | 저널리스트                                                          | 매출액의 4.8%  |
|             | 작가                                                             | 매출액의 2.6%  |

한편, 아래 <표 6>과 같이 동 시행령의 부록표 B파트에서는 해당 업종의 매입세액의 일부분을 계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율을 6개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6> 업종별 표준율 (시행령 부록표 B파트)

| 업 종        | 표준율       |
|------------|-----------|
| 건축기사       | 매출액의 1.9% |
| 수제 노끈제조    | 매출액의 3.2% |
| 변리사        | 매출액의 1.7% |
| 변호사 및 공증인  | 매출액의 1.5% |
| 굴뚝청소부      | 매출액의 1.6% |
| 회계업무 전문종사자 | 매출액의 1.7% |

#### 다. 납부세액의 계산

표준율을 적용받는 경우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 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고 있다.

$$\text{매출세액} \times \text{표준율} = \text{납부세액}$$

#### 라. 일반과세자로 전환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원하는 사업자는 당해연도 개시 10일 이내에 직전연도 초부터의 매출에 대하여 동 표준율에 의하여 과세하는 대신 일반적인 규정에 의하여 과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을 한 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며, 신청한 사업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sup>19)</sup>

#### 마. 독일 표준율과세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독일의 표준율과세제도는 업종별로 크게 4분류로 하고, 또한 그 4분류 안에서 구체적으로 업종을 세분화 하고 있어 체계가 복잡한 편이다. 이렇게 업종 구분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은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과 EU 제6지침 제24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19) 독일 부가가치세법 제23a조 제3항

현재 우리나라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을 5%, 10%, 20%, 30%의 4개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으나, 같은 구간에 속해 있는 업종들은 업종 성질과는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업종마다 부가가치율은 서로 다른 것이 사실이므로, 이렇나라도 현행 4개의 부가가치율 구분을 조금 더 세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3. 일본의 간이과세제도

#### 가. 간이과세제도의 도입과 변화

##### (1) 도입배경

일본은 지난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소규모사업자로부터 납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비용경감을 위해 세액계산방식을 간소화하도록 요구 받았다. 그리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배려 차원에서 납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비용의 경감과 소비세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려고 간이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sup>20)</sup>. 이러한 간이과세제도의 시행으로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방법인 업종별 간주매입율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1989년 소비세 도입당시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억엔 이하의 사업자에게는 매출에 대한 세액의 80%(도매업은 90%)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하였다. 즉, 업종별 간주매입율 과세제도를 선택한 소규모사업자는 당시 3% 세율 하에서 매출금액에 0.6%<sup>21)</sup>(도매업의 경우에는 0.3%<sup>22)</sup>)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소비세’는 처음부터 판매세의 요소를 지니게 되었다.<sup>23)</sup>

##### (2) 개정 현황

##### (가) 1991년의 소비세법 개정

일본은 소비세제 도입 이후로 소비자로부터 소규모사업자에게 지급된 소비세액의 일부가 사업자 이익과 혼합되어 사업자에게 남는다는 ‘익세(益稅)’<sup>24)</sup>가 발생한다는 제도상의 비판이 일어

20) 金子宏, 2006, 『租税法 第十一版』, 弘文堂, p.550.

21)  $3\% - 3\% \times 80\% = 0.6\%$

22)  $3\% - 3\% \times 90\% = 0.3\%$

23) 金子宏, 앞의 책, p.550.

24) 1. 과세대상에 세금을 적게 부과해 세금상 이익을 얻는 것이다.

2. 과세매출액이 정해지면 그 일정비율을 과세매입으로 보아 (의제매입율)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체계를 적용함에 따라 사업자는 실제의 매입에 관한 세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이 실제의 매입액이 의제매입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여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익세가 발생한다(水野忠恒, 2007, 『租税法』, 有斐閣, p.710).

났다.

이와 같은 비판에 따라 1990년 10월 일본 정부세제조사회(政府税制調査會)는 「1991년도의 세제개정과 관련된 답신(平成3年度の税制改に關する答申)」을 발표<sup>25)</sup>하였고, 또한 국회에 설치된 「세제문제 등에 관한 양원합동협의회(税制問題等に關する兩院合同協議會)」에서도 같은 해 12월에 「소비세에 관한 긴급조치에 대한 생각(消費税に關する緊急措置についての考え方)」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에서는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상한과 간이과세제도의 의제매입율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그 견해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간이과세제도 자체의 존치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 내용에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6)</sup>

#### 1)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상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상한에 대해서는 제도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인하에 의한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 및 그 실태 등을 고려하면서 수준을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27)</sup> 그리하여 1991년 5월 1일 「소비세법」의 개정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상한을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5억엔 이하에서 4억엔 이하로 인하하였다.

#### 2) 간이과세제도의 의제매입율의 타당성 여부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 의제매입율의 적용 구분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해야하며, 그 실태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28)</sup> 그리하여 간이과세의 간주매입율에 대하여는 적용사업을 2구분으로 하여 도매업자 90%,

25) 정부세제조사회 안에 설치된 「실시현황팔로우업소위원회(實施狀況フリップ小委員會)」 발표를 기초로 하였다.

26) 岩崎政明, 1995, “消費税の特例計算方法—中小事業者に係る特例措置—”, 『日税研論集』 30号, (財) 日本税務研究センター, pp.288—300.

27) 동 위원회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납세사무가 숙련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업자에 대한 원칙적인 세액계산을 산정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데이터를 보면 우선 간이과세의 적용대상사업자에 있어서는 매출 규모가 클수록 원칙적인 계산을 행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크며, 매출규모가 큰 층에서는 상당정도의 사업자가 이미 원칙적 계산을 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의 사무처리능력에 대해서는 매출규모에 의해서 명확한 격차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매출규모가 크게 되면 사무처리능력이 향상되고, 매출이 5억엔 정도의 사업자의 경우는 상당수의 종업원 및 경리담당자가 있다. 이상을 고려하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상한에 대해서는 제도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인하에 의한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범위 및 그 실태 등을 고려하면서 수준을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岩崎政明, 앞의 논문, p. 302.)

28) 동 위원회에서는 간이과세제도 의제매입율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도

기타사업자 80%로 적용하였던 것을 적용사업을 4구분으로 세분화 하였다. 즉, 적용 간주매입율을 제1종 사업 90%, 제2종 사업 80%, 제3종 사업 70%, 제4종 사업을 60%로 축소하였다.

#### (나) 1994년의 소비세법 개정

1991년 소비세법의 개정 이후에도 중소기업자에 관한 특별조치의 재검토에 관한 논의는 계속 되었다. 정부세제조사회는 1993년 11월 19일 「이후 세제의 본연의 자세에 대한 답신 - 공정으로 활력 있는 고령화 사회를 목표로 하여 (今後の税制あり方についての答申 - 『公正で活力ある高齢化社会を目指して』-)」에서 중소기업자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하여 앞으로 재검토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위의 답신을 토대로 1994년 6월에 「세제개혁에 대한 답신 (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을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는 종전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상한을 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간이과세제도에 대하여 “납세사무의 숙련 등에 따라 많은 사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적용상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의 사무부담을 배려하면서 기준금액의 재인하가 적당하다”<sup>29)</sup> 라고 하면서 종전의 방침을 확인하였다.

1994년 「소비세법」의 개정에서는 세율을 1% 인상하였으며<sup>30)</sup>, 익세에 대한 비판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특별조치가 대폭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대상 역시 대폭 축소되게 되었으며, 이렇게 개정된 소비세는 세율 인상에 대한 검토조향이 설치된<sup>31)</sup> 관계로 1997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든 과세사업자의 세액계산을 계산하는 경우는 모든 과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에 대한 과세와 그것 이외의 것으로 구분·기장함과 더불어 과세매입을 과세매출·비과세매출과 대응하는 등의 사무를 행하게 된다. 이러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일정한 사무처리능력이 필요하지만 그와 같은 능력을 모든 과세사업자에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세액계산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형태를 설치한 것 자체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법인세신고서나 소비세의 신고실적 등에 관한 여러 데이터를 보면 업종마다 매입율에 차이가 있어 평균적인 매입율이 적은 업종들은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사업자가 많다. 또한 동일업종에 있어서도 매출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매입율이 적으며, 간이과세를 선택하는 사업자의 비율이 높다. 게다가 사업자가 간이과세의 선택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세리사(税理士)에게 상담하는 사례가 많은 것을 생각한다면 납세사무의 간소화라는 관점만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의 매입율과 의제매입율과의 비교를 염두에 두고 세부담상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 의제매입율의 적용구분이나 수준에 대해서는 제도의 공평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재검토를 행하며, 그 실태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岩崎政明, 앞의 논문, p.299.)

29) 岩崎政明, 앞의 논문, p.302.

30) 새롭게 도입된 지방소비세 1%가 포함되어 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다.

31) 2006년 8월까지 검토조향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내각에서 2006년 6월 결정하였다.

1997년부터 시행된 간이과세제도는 그 적용상한을 4억엔에서 2억엔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또한 적용사업을 4구분에서 5구분으로 한층 더 세분화 하였으며, 새로 포함되는 제5종 사업에 대하여는 50%의 간주매입율을 적용하였다.

#### (다) 2003년의 소비세법 개정

2002년 11월 발표한 정부세제조사회 「2003년도 세제개혁에 대한 답신 (平成15年度にお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에서는 소비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나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세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32)</sup>

동위원회는 간이과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sup>33)</sup> 즉, 소비세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 간이과세제도의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2003년 「소비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의 적용상한은 2억엔에서 5천만엔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이러한 대폭적인 간이과세 적용상한의 인하로 대략 106만명이었던 간이과세적용 사업자수가 대략 50만명으로 그 수가 절반으로 감소되기에 이르렀다.<sup>34)</sup>

#### (라) 2007년 11월 발표된 정부세제조사회 보고서

2007년 11월에 정부세제조사회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향한 기본적 생각 (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을 발표하였다. 동위원회는 사업자 면세점제도나 간이과세제도의 재검토에 대하여 “소비세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생각되지만, 소비세의 충실을 기하는데 한층 더 대처가 요구된다. … 사업자면세점제도나 간이과세제도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필요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sup>35)</sup>고 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비록 2002년 11월 발표한 정부세제조사회의 「2003년도 세제개혁에 대한 답신」에서와 같이

32) 日本税制調査會, 2002.11. 「平成15年度にお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 p.10 (<http://www.cao.go.jp/zeicho/tosin/pdf/141119.pdf>)

33) 동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 적용상한을 인하하고 의제매입율의 개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원칙적인 계산방법에 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자의 대부분이 납세액의 손익을 계산한 다음 간이과세제도 적용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면세점 제도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과세사업자가 되는 사람의 사무 부담을 배려하면서 간이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日本税制調査會, 2002.11. 「平成15年度にお税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税制の構築に向けて—」 2002.11. p.10.

(<http://www.cao.go.jp/zeicho/tosin/pdf/141119.pdf>)

34) 小池拓自, 「消費税を巡る議論」, 『調査と情報』第609号, 國立國會図書館, 2008.2. p.3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issue/0609.pdf>)

35) 日本税制調査會, 「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2007.11. pp.23-24.

(<http://www.cao.go.jp/zeicho/tosin/pdf/191120a.pdf>)

“간이과세제도가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간이과세제도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간이과세제도의 변화

|       | 창설                            | 1991년도 개정                                                                                                          | 1994년도 개정                                                  | 2003년도 개정          |
|-------|-------------------------------|--------------------------------------------------------------------------------------------------------------------|------------------------------------------------------------|--------------------|
| 시행    | 1988년 4월                      | 1991년 10월                                                                                                          | 1997년 4월                                                   | 2004년 4월           |
| 적용상한  | 연간과세매출액<br>5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4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2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5,000만엔 |
| 간주매입율 | (2단계)<br>도매업자 90%<br>기타업자 80% | (4단계)<br>제1종 사업 90%<br>(도매업)<br>제2종 사업 80%<br>(소매업)<br>제3종 사업 70%<br>(제조업 등 <sup>주1)</sup> )<br>제4종 사업 60%<br>(기타) | (5단계)<br>4단계에 제5종 사업<br>(부동산업 등 <sup>주2)</sup> )<br>50% 추가 | 좌동                 |

주1) 제조업 등 : 농업, 임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등

주2) 부동산 등 : 부동산업, 운송통신업, 서비스업

#### 나. 현행 일본의 간이과세제도의 내용

##### (1)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요건

과세매출액이 5,000만엔 이하의 과세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수 있다. 과세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가 되면 면세사업자가 된다.

##### (2) 의제매입율

의제매입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당해 사업에 있어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된 소비세액 가운데 과세매입 등의 세액에 통상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5가지로 구분한 사업에 적용하는 의제매입율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sup>36)</sup>

##### (가) 사업구분에 의한 의제매입율

제1종 사업에서 제5종 사업까지의 사업구분에 따른 간주매입율은 다음의 <표 8>과 같이 정하

36) 日本消費税法施行令 第57條

고 있다.

〈표 8〉 사업구분에 따른 간주매입율

| 구 분                           | 의제매입율 |
|-------------------------------|-------|
| 제1종 사업 (도매업)                  | 90%   |
| 제2종 사업 (소매업)                  | 80%   |
| 제3종 사업 (제조업, 농·임·어·광업, 건설업 등) | 70%   |
| 제4종 사업 (기타사업)                 | 60%   |
| 제5종 사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운송통신업 등)  | 50%   |

#### (나) 사업구분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의 사업구분은 제1종 사업부터 제5종 사업으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제1종 사업

제1종 사업에 속하는 것은 도매업이다. 도매업이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성질 또는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된 상품의 판매(업무용 소매)에 있어서도 사업자에게 판매한 것이 장부 및 증빙서류 등에 의해 확인되면 도매업에 해당된다.

##### 2) 제2종 사업

제2종 사업에 속하는 것은 소매업이다. 소매업이란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성질 또는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사업으로 도매업 이외의 것을 말한다.

##### 3) 제3종 사업

제3종 사업에는 제조업(제조한 재고자산을 소매하는 사업 포함),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및 수도업 등이다. 제3종 사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속한 분류를 기초로 판정한다. 또한 아래의 사업 역시 제3종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① 자기계산에 의해 원재료 등을 구입하고 미리 작업 지시한 조건에 따라 하청가공하여 완성품으로 하는 제조 도매상
- ② 자기가 수주한 건설공사 전부를 하청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청
- ③ 천연수를 채취하여 병 등으로 조립 음료용으로 판매하는 사업
- ④ 신문·서적 등의 발행과 출판을 행하는 사업

##### 4) 제4종 사업

제1종, 제2종, 제3종 사업 및 제5종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4종 사업으로 한다.

### 5) 제5종 사업

제5종 사업에는 서비스업(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부동산업, 운송통신업으로 한다.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음식점업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 바, 연회장 등과 같이 호텔의 숙박자 이외의 자도 이용하여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 요금을 계산할 곳이 있는 것
- ② 숙박객의 음식물의 제공에서 숙박서비스와 세트로 되어 저녁식사 등의 제공시에 숙박자의 주문에 따라 행한 음료, 특별요리 등의 제공이나 객실내 냉장고를 설치 음료 등을 제공하며 숙박료와 구분하여 요금을 받는 것

#### (다) 간이과세제도에서의 납부세액

일본의 간이과세제도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sup>37)</sup>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액} - (\text{과세매입에 관련된 소비세액} \\ &\quad + \text{매출대가의 반환과 관련된 소비세액} + \text{대손과 관련된 소비세액}) \end{aligned}$$
  

$$\begin{aligned} \text{과세매입과 관련된 소비세액} &= (\text{과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액} - \text{매출대가의 반환과 관련된 소비세액}) \times \begin{bmatrix} \text{제1종사업} 90\% \\ \text{제2종사업} 80\% \\ \text{제3종사업} 70\% \\ \text{제4종사업} 60\% \\ \text{제5종사업} 50\% \end{bmatrix} \end{aligned}$$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도매업에 전업하고 있다면 간주매입률은 90%가 된다. 이 때 대손과 관련된 소비세액이 0이라 가정하면 이 사업자의 납부소비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egin{aligned} \text{도매업 종사(전업)자의 납부소비세액} \\ &= (\text{과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액} - \text{매출대가의 반환과 관련된 소비세액}) \times 0.1 \end{aligned}$$

이 때 만약 매출대가의 반환과 관련된 소비세액이 0이라고 하면 도매업 전업자의 납부소비세액은 과세매출에 관련된 소비세액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 다. 일본의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향후 전망

일본은 지난 1989년 소비세를 도입하고 소규모사업자에게 납세절차의 간소화와 납세비용의

37)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pp.219-220 참조.

경감이라는 정책적 배려로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이러한 간이과세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소비세 도입을 용이하게 그리고 빨리 정착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도입된 간이과세제도는 도입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소비자로부터 소규모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비세액의 일부가 사업자 이익과 혼합되어 사업자에게 남는다는 ‘익세(益稅)’ 문제가 발생하였고, 둘째, 납세절차의 간소화를 고려한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사업자가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할 때에 정상 매입율과 간주매입율을 고려하여 자기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택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로 귀착이 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간이과세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면서 간이과세제도의 특례적용대상 범위를 계속적으로 축소하였다. 즉, 1989년 소비세 도입당시에는 과세매출액이 5억엔 이하의 사업자에게 매출에 관한 세액의 80% (도매업의 경우는 90%)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나,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세 번의 법개정을 거치면서 적용상한은 5,000만엔으로 대폭 인하가 되었으며, 간주매입율을 적용받는 사업을 5 구분으로 세분화함과 동시에 적용 의제매입율도 90%에서 50%까지로 대폭 축소되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정부세제조사회 의견과 같이 소비세제의 공평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면세점의 인하와 더불어 종전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그들에 대한 완충적 역할과 또한 실제 납세절차처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로 현재에도 간이과세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은 버블붕괴 후에 ‘급격히 악화된 국가 재정의 재건’과 ‘고령화사회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유지’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소비세 세율 인상 등의 소비세의 근본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sup>38)</sup>. 이러한 소비세의 개혁에 따라 앞으로 간이과세제도는 기준금액이 더욱 낮아지거나 간이과세제도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 제도

##### 가. 개 요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한국의 간이과세자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는 회계관리가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반 납세의무자와 같은 체계적인 신고납부를 할 수가 없으므로 일반납세의무자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sup>39)</sup>

38) 小池拓自, 앞의 논문, pp.3-6. 참조

(<http://www.ndl.go.jp/data/publication/issue/0609.pdf>)

39) 서정우, 2012, “稅收支持小企業發展的中韓比較研究”, 중국인민대학 석사학위논문, pp.45-47.

중국의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매출액에 징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나, 한국의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일반납세의무자보다는 낮은 세율(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산출하는 점은 같으나 매입세액도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 점에서는 중국과 차이가 있다.

한국과 중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차이를 설명하면 아래 <표 9>와 같다.

<표 9> 한국과 중국의 용어 차이

| 구 분   | 중 국       | 한 국                  |
|-------|-----------|----------------------|
| 납세의무자 | 소규모 납세의무자 | 간이과세자                |
| 매출세액  | 매출액×징수율   | 매출액×업종별 부가율          |
| 매입세액  | 공제할 수 없음  |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 |

#### 나. 납부세액의 계산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출액과 징수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방법을 실시하며, 산출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납부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매출액(세액 미포함)} \times \text{징수율}^*$$

\*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증치세 징수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과거의 6% 또는 4%로부터 일괄적으로 3%로 적용되었으며 징수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sup>40)</sup>

첫째, 소규모 납세의무자와 일반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인식기준은 동일한데 모두 재화를 공급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여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가 전체와 가격 외 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3%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수취한 증치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둘째,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기장능력이 부족하여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구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닌 간이과세방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40) 회계법인 대광, 2012, 『최신 중국세법실무』, (주)영화조세통합

## IV. 우리나라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 가. 간이과세자의 높은 비율

2013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5,609,470명 중 간이과세자는 1,779,011명으로 31.71%이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26조 9,695억원으로 전체 4,326조원 중 0.6%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전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77조 6,642억원 중에서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2,764억원으로 비중은 0.4%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나. 간이과세 한계사업자의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

우리나라는 국민의 납세의식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낮은 납세의식은 상거래 관계에서 인간적·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여 세금계산서등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사업자의 조세회피에 대해 방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sup>41)</sup> 더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계산의 선행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단계에서부터 선행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낮은 납세의식 속에서 간이과세제도를 계속적으로 존치한다면 소규모사업자들의 조세회피성향이 더욱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므로<sup>42)</sup> 간이과세에 안주하려는 소규모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근거과세를 저해하고 탈세의 온상이 되며, 또 선행세목인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소득세의 탈루로 계속 이어진다. 이와 같은 간이과세 사업자들의 탈루는 근로소득자 등 타 소득자들과의 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사실은 1999년도 말을 기준으로 과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된 당시 국세청 통계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10>에 의하면 1999년도 까지 전체 부가가치세 사업자 중 37.4%를 차지하던 과세특례자가 2000년에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간이과세자 중 약 1/3 정도만이 2000년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41) 우리나라 국민들의 조세에 대한 관념은 아직도 ‘강제적인 부과’ 또는 ‘일방적인 의무’로 인식되고 있어,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의 수수기피나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등의 수수행위를 조세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관 내지 묵인하는 거래풍토가 남아 있으며, 또한 전근대적인 생활태도의 상존과 비과학적인 기업경영,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관습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실거래의 생성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42) 세 부담과 납세 절차면에서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는 조세부담을 줄이려는 소규모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의 수수기피 심리가 발동하게 하며, 그 결과가 부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1999년까지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기준은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및 1억 5천만이었으며, 2000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이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점을 고려하면 1999년까지의 간이과세자는 2000년에는 전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어야 한다.

〈표 10〉 부가가치세 사업자 과세유형별 납세인원

|          | 1999년 2기  |        | 2002년 2기  |        |
|----------|-----------|--------|-----------|--------|
|          | 인원 (명)    | 비율 (%) | 인원 (명)    | 비율 (%) |
| 법인 일반과세자 | 232,474   | 7.8    | 278,657   | 8.2    |
| 개인 일반과세자 | 1,059,109 | 35.3   | 1,442,987 | 42.6   |
| 간이과세자    | 586,800   | 19.5   | 1,669,128 | 49.2   |
| 과세특례자    | 1,120,573 | 37.4   | —         | —      |
| 합 계      | 2,998,956 | 100    | 3,390,772 | 100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결국, 매출액의 평균적인 증가율을 무시하고, 1999년까지 매출액 신고가 정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의 2/3정도, 즉, 40만명 정도의 간이과세 한계사업자는 간이과세 영역에 안주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과거보다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가 얼마나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사업자들이 스스로 체감하고 있음을 반증 해 주는 것이다.

#### 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적용 불합리

간이과세제도에서는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납부세액이 계산됨으로써 부가가치율의 산정이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율은 그 산정에 있어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만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얻게 된다.

따라서 만약 적용 부가가치율이 당해 업종의 사업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할 경우에는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간이과세자 사이에서도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 부담이 다르게 나타나는 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정한지 여부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래 <표 11>에서 일반과세자(③)와 간이과세자(④)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부가가치율과 적용세율을 비교하여 보면 업종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11〉 과세유형별·업태별 세부담율표

(단위 : %, 배)

| 업 태             | ① 부가가치율 | ② 현행<br>간이과세자<br>부가가치적용율 | ③ 적용되는<br>일반과세자<br>세율 ①×10% | ④ 적용되는<br>간이과세자<br>세율 ②×10% | ⑤ 차이율<br>③/④ |
|-----------------|---------|--------------------------|-----------------------------|-----------------------------|--------------|
| 농·임·어업          | 37.4    | 20                       | 3.74                        | 2                           | 1.87         |
| 제조업             | 37.7    | 20                       | 3.77                        | 2                           | 1.88         |
| 전기·가스·수도업       | △103.6  | 5                        | △10.3                       | 0.5                         | —            |
| 소매업             | 11.3    | 10                       | 1.13                        | 1                           | 1.13         |
| 건설업             | 48.1    | 30                       | 4.81                        | 3                           | 1.60         |
| 음식업             | 23.4    | 10                       | 2.34                        | 1                           | 2.34         |
| 숙박업             | 17.1    | 20                       | 1.71                        | 2                           | 0.85         |
| 운수·창고·통신업       | 26.7    | 20                       | 2.67                        | 2                           | 1.33         |
| 부동산임대업          | 55.6    | 30                       | 5.56                        | 3                           | 1.85         |
| 대리·중개·<br>주선·도급 | 59.6    | 30                       | 5.96                        | 3                           | 1.98         |
| 서비스업            | 52.8    | 30                       | 5.28                        | 3                           | 1.76         |

주) 1. 일반과세자의 2013년도 제1기, 제2기 평균 부가가치율을 기준으로 함.

2. 소수점 첫 자리 이하는 절사하였음.

자료 : 국세청 「2014국세통계연보」, 9-1-4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전단계세액공제방법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수수된다는 가정하에 매출세액은 생산 부가가치에 세율 10%를 곱하여 계산되므로, 위의 <표 11>에서 ③과 같다.

한편 간이과세자는 <표 11>에서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매출세액을 계산하며, 현행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5%, 10%, 20%, 30%가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매출세율은 0.5%, 1%, 2%, 3%가 된다.

그러나 위의 <표 11>에 따라 업태별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적용되는 세율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율은 0.5 이나 일반과세자는 △10.3으로 간이과세자의 적용률이 크게 높다. 또한 숙박업의 간이과세자 적용률은 2 이나 일반과세자는 1.71로 간이과세자의 적용율이 높다.

그러나, 일부 업태에서는 반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즉, 대리·중개·주선·도급에서 일반과세자는 5.96이며, 간이과세자는 3으로 일반과세자가 1.98배나 높다. 또한 운수·창고·통신업에서도 일반과세자는 2.67로 간이과세자 2보다 1.33배가 높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5%, 10%, 20%, 30% 4단

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 4단계로 구분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율은 실질적 부가가치를 반영하는데 미흡함으로, 조금 더 많은 단계로 부가가치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2.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

### 가. 장기적인 개선방안

#### (1) 매출누락하기 힘든 사회 환경을 조성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사업자들이 매출 누락할 수 없도록 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에게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세 세액공제제도를 조금 더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점차 줄이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 (2)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원에 대한 조정을 통한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 4,800만원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준금액 4,800만원 바로 아래 안주하려는 한계(위장) 간이과세자<sup>43)</sup>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한계(위장)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처음 단계에서는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낮추고, 다음 단계에서는 2,400만원으로 낮추어 ‘납세의무의 면제’ 기준금액과 통일시키도록 한다. 결국에는 자연적으로 간이과세자를 없애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일본의 아래 <표 12>와 같은 3차례에 걸쳐 시행한 간이과세 적용상한 금액 인하정책에서 우리나라가 얻는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표 12> 일본 간이과세 적용상한 금액 변동추이

|      | 도입당시           | 1차 개정          | 2차 개정          | 3차 개정              |
|------|----------------|----------------|----------------|--------------------|
| 시행   | 1988년 4월       | 1991년 10월      | 1997년 4월       | 2004년 4월           |
| 적용상한 | 연간과세매출액<br>5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4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2억엔 | 연간과세매출액<br>5,000만엔 |

43)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기준금액인 공급대가 4천8백만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구분하고 있어 이 기준금액 바로 아래 안주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1. 사업자위장, 2. 거래위장, 3. 자료상, 4 기타 위장거래를 하고 있다.

사실 전자장부 등으로 납세준용비용 역시 줄어들고 있으므로 소규모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과거보다 경제적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면세점 이하의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서 그에 대한 완충적 역할과 납세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소규모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차원에서 현재까지 간이과세제도를 존속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간이과세자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면 간이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나. 단기적인 개선방안

##### (1)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업종별로 세분화

현재의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 4,800만원을 하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같은 공급대가라 하더라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르므로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현행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5%, 10%, 20%, 30% 4단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4단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독일의 52단계나 일본의 5단계와 같이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독일의 52단계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체계를 더욱 복잡화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5단계나 또는 10단계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는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 (2) 다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간이과세 제한

본래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 대한 납세비용의 절감과 납세사무능력을 감안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장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한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러 개 사업장을 가진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중심으로 과세를 변경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sup>44)</sup>

##### (3) 간이과세 배제업종의 확대

현행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단기적으로 점차 확대하여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44)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부법 61①, 부령 109 ②, 부칙 71 ①).

것이 바람직스럽다. 또한 현금거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들도 간이과세자에서 배제하는 등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 V. 결 론

우리나라는 국민의 납세의식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낮은 납세의식은 상거래 관계에서 인간적·경제적인 면을 강조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하고 사업자의 조세회피에 대해 방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소득세 계산의 선행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단계에서부터 선행적인 조세회피행위가 시작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경우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의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영수증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 불건전한 납세관행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어 부가가치세 본연의 기능이 왜곡되고 건전한 납세풍토의 정착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납세인원 5,609,470명 중 간이 과세자의 납세자 인원은 1,779,011명으로 그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납부세액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은 2,764억원으로 전체 납부세액 77조 928억원 가운데 0.4%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장기적인 개선방안으로 일본의 ‘정부세제조사회’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소비세제도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제도는 폐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세액공제율을 점차 줄이려는 우리정부의 정책방향은 시기적으로 너무나 이른 감이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일본 역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는 반드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단기적인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5%, 10%, 20%, 30% 4단계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실질적인 부가가치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과 같은 5단계나 또는 10단계 정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는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동시에 조금 더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문헌

- 국세청. 2014. “2014 국세통계연보”, <http://www.nts.go.kr>
-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법진·함영복. 2000, “부가가치세 포탈방지에 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권 제2호 : 379-412.
- 김유찬·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독일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나성길·최명근. 2007. 「부가가치세법론」, 개정18판, 세경사.
- 박성배·이명구·홍정화. 200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 현실화 방안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7권 제2호 : 119-140.
- 서정우. 2012. “稅收支持小企業發展的中韓比較研究”, 중국인민대학 석사학위논문.
- Suh, Jung Woo · Yue, Shu Min. 2013. “Study on the System of corporate income tax for support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on China”, 한국회계정보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 351-371.
- 서희열. 2015. 「소비세제법」, 제25판, 세학사.
- 서희열·김승철. 1997. “간이과세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9호 : 129-171, 1225-1339.
- 손도국·정지선·양승경. 2014. “마일리지(Mileage) 거래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회계저널 제15권 제6호 : 83-116.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991,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과 과세특례자의 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8집.
- 현진권. 2000.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의 평가”, 세무학연구 제16호 : 147-175.
- 홍순필. 2013.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재필. 2014.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회계법인 대광. 2012. 「최신 중국세법실무」, 영화조세통람.
- 金子宏. 2006. 「租稅法」, 第十一版, 弘文堂.
- 水野忠恒. 2007. 「租稅法」, 第三版, 有斐閣.
- 日本稅制調査會. 2002. 「平成15年度にお稅制改革についての答申—あるべき稅制の構築に向けて—」.
- 小池拓自. 2008. 「消費稅を巡る議論」, 『調査と情報』第609号, 國立國會圖書館,
- 岩崎政明. 1995. “消費稅の特例計算方法—中小事業者に係る特例措置—”, 「日稅研論集」 30号, (財) 日本稅務研究センター.
- 日本稅制調査會. 2007. 「抜本的な稅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 Study of Improvements on Simplified Taxation - Centered on the Cases of Germany, Japan and China -

Jungwoo, Suh\*

— <Abstract> —

Many researchers agree with the fact that the Korean people have low awareness of tax payment and it tends to bring about firstly a situation that does not want to receive tax invoice emphasizing too intimate human relations and secondly the practice of not taking seriously tax avoidance. In addition, income tax is fundamentally based on the assessment standard for value added tax (VAT) and the potential of tax avoidance gets already involved with the start of VAT calculation.

For VAT, small businesses intentionally reduce their tax data or even try to get the benefit of simplified taxation and such things have not only distorted the right function of VAT but blocked the progress of healthy taxation environment.

As of 2013, 1,779,011 get the status of simplified taxation among the total 5,609,470 VAT taxpayers. When it comes to amount of tax payment, 276.4 billion Won is for the simplified taxation taxpayers and the number accounts for only 0.4% in the sum of 77.929 trillion Won to pay.

This study suggests both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s for the current simplified taxation system. For the long-term improvement,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abolished in principle to acquire reliability · transparency of consumption tax regime as revealed in the government's tax system research council of Japan. From it,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to gradually reduce income tax deduction rate and tax credit rate when using credit cards or cash receipts is too soon. The opinions to abolish simplified taxation are also dominant in Japan.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discontinue it in order to minimize problems caused by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e current value-added ratio of 4 steps by business categories (5%, 10%, 20% and 30%) applied to simplified taxation taxpayers does not reflect a real added value ratio. Hence, as a short-term improvement, the adoption of 5 or 10 steps which Japan has taken could be possible. This is also important in terms of fairness among taxpayers and more exact calculation of amount of tax payment as well.

<Key words> simplified taxation taxpayers, small businesses, general taxpayers, VAT taxation type

---

\* Ph. D. Candidate, Renmin University of China, School of Finance